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69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미애 · 백종현 · 김형동
엄태영 · 우재준 · 김재섭
서지영 · 최보운 · 유상범
김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丘陵地)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운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u> <u>구릉지(丘陵地) 및 도로가 협</u> <u>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u> <u>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u> <u>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u> <u>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u> <u>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u> <u>노선의 운행</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